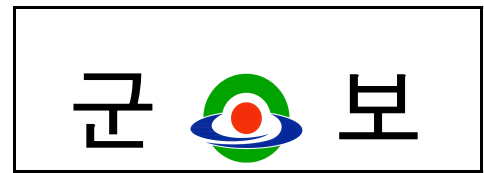


예 천 군



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제1199호 2019. 10. 28.(월)

선 람	기 관 의 장

공 고

○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(예천군 공고 제2019-31호)

회 람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(전화 650-6066)

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·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19년 10월 28일

예 천 군



1. 개정 이유

불필요한 이용대상 규정 및 근거 없는 지자체 면책 규정을 삭제하여 공공시설의 공공성을 높이고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이용대상 규정 삭제 (안 제7조)

- 현행 : 예천군 내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, 국가 및 공공기관,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·단체, 그 밖에 지역주민 등
- 개정 : 해당 조문 삭제

나. 손해배상 관련 지자체 전면적 면책 규정 삭제 (안 제17조제1항)

- 현행 : 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함
- 개정 : 해당 조문 삭제

3. 개정조례안

붙임과 같음

4. 의견제출

이 조례 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1월 18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(참조 : 예천군체육사업소장)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: 찬·반 여부의 그 사유

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), 주소, 연락처, 기타 참고사항 등

다. 제출 방법 : 서면, 팩스, 전화, 전자우편, 방문 등

라. 보내실 곳

- 주소 : 우)36819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393 예천군청소년수련관 2층, 예천군 체육사업소 시설관리팀
- 전화 : 054-650-6424, 팩스 : 054-650-6429
- 전자우편 : snowcat04@korea.kr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 : 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

○ 주 소 :

○ 전 화 번 호 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

예천군 조례 제 호

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예천군 청소년수련관 운영·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삭제한다.

제17조제1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사용범위) <u>수련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<u>1. 예천군 내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</u> <u>2. 국가 및 공공기관, 각급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법인·단체</u> <u>3. 그 밖에 지역주민 등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및 단체</u>	<u><삭 제></u>
제17조(손해배상) ① <u>군수는 사용자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</u> ②·③ (생략)	제17조(손해배상) ① <u><삭 제></u> ②·③ (현행과 같음)